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233

발의연월일: 2022. 12. 29.

발 의 자:전봉민·김태호·백종헌

서일준 • 윤주경 • 이종배

이종성 • 정우택 • 김승수

정운천 • 황보승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률로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주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인 '주민e 직접'이 구축·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청구권자 요건을 충족해야 조례의 주민발 안이 가능하지만 인구가 적거나 홍보가 부족한 등의 사유로 기한 내 필요한 서명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되는 주민청구조례안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의회의 장이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려는 법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례청구 참여·서명방법,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필요한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5조제1항및 제12조제1항).

법률 제 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교육·홍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주민조례청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참여·서명방법,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200분의"를 "250분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0분의"를 "188분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0분의"를 "125분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70분의"를 "88분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50분의"를 "63분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20분의"를 "25분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을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0조제1항에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전단에 따라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보정된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보정된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수리 또는 각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 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례의 제 정과 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요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기준이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같은 항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교육・홍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주민조례청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
	구 참여·서명방법, 그 밖에 주
	민조례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	
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	1
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	
수의 <u>200분의</u> 1	<u>250분의</u>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	2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	
구권자 총수의 <u>150분의</u> 1	
	<u>188분의</u>

-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총수의 70분의 1
-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총수의 50분의 1
-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u>20</u> 분의 1
- ②・③ (생략)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 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 경우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u>125분의</u> -
_
4
<u>88분의</u>
5
6
<u>25분의</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u>포함</u>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0조제1 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 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전단에 따라 제11 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는 보정된 청구인명부를 제출 받거나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 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 하는 기간 이내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1. • 2. (생략)

② ~ ④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